

알기 쉬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서류제출 안내

★ 반드시! 참고사항 및 기타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★

참 고 사 항

- 서류제출 후에도 심사 중 필요한 서류가 발생하여 연락드릴 수 있으니 [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]의 비상연락망을 반드시 기재
 - 번호변경이 될 경우 자격관리본부(02-786-0845)로 연락
 - 우편발송 시 **봉투 겉면 '2017년 제15회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제출서류' 기재요망**
 - 업무처리를 위한 주민번호(뒷자리 포함)가 필요하오니 반드시 기재
 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에 따라 협회에서는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대한 민감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 취급가능
 - **사진 동봉 금지:** 응시자격 서류심사로 자격증발급과는 무관
 - 최종합격자 발표 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별도 신청
 - ※ 실수로 동봉한 사진의 경우 별도 고지 없이 파기
 - **통화(돈) 동봉 금지:** 응시자격 서류심사로 자격증발급과는 무관
 - [참고] 우편법 시행규칙 제29조(통화등기) 관련 참조
 - ※ 실수로 동봉한 통화에 대하여 확인 및 분실에 대한 본 협회에 책임불가
 -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**[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] 미제출**
 - ※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(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)의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
 - ※ 자격소지여부확인
 - ▶ [자격관리센터(lic.welfare.net) →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자격증정보]
 - 응시자격서류도착확인은 우편(등기)발송 후 5일 내 확인 가능(업무일기준)
 - ▶ 조회방법: [자격관리센터(lic.welfare.net) →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서류접수조회]
- ★ **시일(최대 5일) 내 조회가 안 될 경우에만(순차적 진행) ★**

 - ① 인터넷우체국(www.epost.go.kr) → 메인화면에서 [등기번호로 조회]
 - ② 자격관리센터(02-786-0845)로 문의

※ 발송 후 최대 5일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
-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출력한 서류로 제출
 - ※ 단, **[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], [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] 제외!**
 -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 제출이유
 -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**학위 및 학점 등 사후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**

□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

1. 대학원 졸업자 (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)	
1-1. 대학원(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)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대학원 졸업 · 성적증명서 ▪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(단,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)
2. 대학교 졸업자 (전공무관)	
2-1. 대학교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대학교 졸업 · 성적증명서 ▪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(단,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)
2-2. 대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(편)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편)입학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 (※ 성적증명서는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) ▪ (편)입학한 학교 졸업 · 성적증명서 ▪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(단,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)
2-3.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 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대학교 졸업 · 성적증명서 (※ 성적증명서는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) ▪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▪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(단,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)
2-4.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대학교에 (편)입학하여 졸업한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편)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▪ (편)입학 한 대학교 졸업 · 성적증명서 (※ 성적증명서는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) ▪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(단,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)
2-5.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(편)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편)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(※ 성적증명서는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) ▪ (편)입학한 대학교 졸업 · 성적증명서 ▪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(단,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)
2-6.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 · 성적증명서 ▪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(단,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)
2-7. 외국대학을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졸업증명서(학위증) ※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 · 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▪ 학력인정확인서 ※ 아포스티유(Apostille)협약 가입국은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로 대체함 ▪ 출입국사실증명서 ▪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▪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(단,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)

3.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2017. 2. 28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 자
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(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) ※ 경력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각각의 기관에서 발급 ▪ 건강보험득실확인서(사본)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) ▪ 경력기관확인서류(아래 중 해당사항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시설인 경우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(사본) ※ 고유번호증,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 </td> </tr> <tr> <td>법인·비영리단체인 경우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(사본) ▪ 정관(목적과 사업부분만)(사본) </td> </tr> </table>	시설인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(사본) ※ 고유번호증,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 	법인·비영리단체인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(사본) ▪ 정관(목적과 사업부분만)(사본)
시설인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(사본) ※ 고유번호증,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 				
법인·비영리단체인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(사본) ▪ 정관(목적과 사업부분만)(사본) 				
3-1.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전문대학 졸업 · 성적증명서 ▪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(단,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) 				
3-2.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전문대학 졸업 · 성적증명서 (※ 성적증명서는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) ▪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▪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(단,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) 				
3-3.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문학사학위·성적증명서 ▪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(단,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) 				

4.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최종학교 졸업증명서, 양성교육 수료증(사본) 각 1부 ▪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(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) ▪ 건강보험득실확인서(사본)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) ▪ 경력기관확인서류(아래 중 해당사항) 	
시설인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(사본) ※ 고유번호증,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
법인·비영리단체인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(사본) ▪ 정관(목적과 사업부분만)(사본)

5. 외국대학(원) 졸업자 (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)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졸업증명서(학위증), 성적증명서 ※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·공증한 서류(원본) 각 1부 ▪ 학력인정확인서 ※ 아포스티유(Apostille)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로 대체함 ▪ 출입국사실증명서

□ 응시자자격심사 제출서류 설명

1.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

- (중요) 반드시! 당해연도(2017년) 제공한 [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]로 작성
 - ▶ 다운로드: 자격관리센터(lic.welfare.net) → 공지사항 → 00000000
 - ※ 과거 사용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보류 내지는 불합격 처분 받을 수 있음
- 출력 후 직접작성하거나 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도 가능
 - ※ 단, 양식하단 [서명 또는 인]의 경우 본인 직접 서명해야 함
- 사회복지사 자격번호확인방법은 위 참고사항 확인
- 2003년~2009년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여부 체크
 - ※ 2003년~2009년도 국가시험 응시자수험자로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
 - ▶ [졸업증명서], [성적증명서] 제출필요 없음
- 개인정보 작성 및 기타 제출서류 내역 체크

2. 기본증명서 1부(원본제출)

- 주민자치센터 방문발급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family.scourt.go.kr) 발급
- 등본내지는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서류명칭 자체가 [기본증명서]임
- 기본증명서의 경우 [등록기준지], [주민등록번호]이 명시된 상세증명서로 발급

3. 최종학력증명서 1부(원본제출)

- 주민자치센터 또는 기타 인터넷민원대행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발급
- [졸업증명서], [학위증명서], [학력인정확인서] 등으로도 호칭
- [졸업(예정)증명서], [수료증명서] 인정불가
 - ※ 학력을 증빙하는 서류가 아님
- [해당자만] 외국대학졸업자의 경우

사회복지전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졸업증명서(학위증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※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▪ 학력인정확인서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※ 아포스티유(Apostille)협약 가입국기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로 대체함▪ 출입국사실증명서(읍·면·동 주민자치센터 발급)
비전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졸업증명서(학위증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※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▪ 학력인정확인서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※ 아포스티유(Apostille)협약 가입국기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로 대체함▪ 출입국사실증명서(읍·면·동 주민자치센터 발급)

- [해당자만] **양성교육수료자인 경우**: 양성교육 수료증(사본) 추가제출
- ※ **양성교육 수료증(사본) 분실한 경우** 해당 양성교육기관에서 재발급 후 제출

4. 성적증명서 1부(원본제출)

- 주민자치센터 또는 기타 인터넷민원대행서비스 등 이용하여 발급
- 사회복지사 자격관련 **법정교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**
- ※ **기타 다른 학력의 성적증명서(사회복지사 법정교과목 외)는 제출불필요**
- 일반 대학에 입학하여 이수한 교과목은 **해당 학교 성적증명서로 제출**
- 시간제(학점은행)로 이수하셨을 경우 **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명의의 성적증명서로 제출**
- 일반 대학 및 시간제(학점은행)에서 각각 이수하신 경우 **각각의 성적증명서 제출**
- [해당자만] 외국대학졸업자의 경우

사회복지전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성적증명서 ※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
비전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회복지사 자격관련 법정교과목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(국내)

5.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(원본제출)

- **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**(확인방법은 위 상단 **참고사항** 참조)
- 출력 후 직접작성하거나 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도 가능
- ※ 단, 양식 하단 [서명 또는 인]의 경우 **각 담당자가 직접 [서명 또는 날인] 해야 함**

6.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증명서 1부(원본제출)

★ 최종학력(가장 높은 학력)이 [전문학사(전공무관)]이거나 [사회복지사 양성과정]을 통한 자격발급자만 제출하는 서류★

-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협회에서 게시한 [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증명서]양식 작성
- ▶ 다운로드: 자격관리센터(lic.welfare.net) → 공지사항 → 00000000
- ※ **과거 사용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보류 내지는 불합격 처분 받을 수 있음**
- ※ **공무원의 경우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제출**
- 출력 후 직접작성하거나 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도 가능
- ※ 단, **확인자 및 시설, 기관 등의 인은 직접 날인해야 함**

7. 경력기관 확인서류 1부(사본제출)

★ 최종학력(가장 높은 학력)이 [전문학사(전공무관)]이거나 [사회복지사 양성과정]을 통한 자격발급자만 제출하는 서류★

- 기관확인서류

시설인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 ※ 지자체별 명칭이 약간 다를 수 있음
법인·비영리단체인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 ▪ 정관(목적과 사업부분만)
위탁기관 또는 지정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위수탁협약서 또는 지정서 ※ 지자체별 명칭이 약간 다를 수 있음
기타 기관(병원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법인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국가기관(공무원 해당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없음 ※ 공무원의 경우 국가소속으로 법인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므로 제출불필요

※ 법인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써 [고유번호증]이나 [사업자등록증]은 해당하지 않음

8. 건강보험득실확인서(사본제출)

★ 최종학력(가장 높은 학력)이 [전문학사(전공무관)]이거나 [사회복지사 양성과정]을 통한 자격발급자만 제출하는 서류★

-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서 발급

9. 기타서류(해당자만)

-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: [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] 또는 [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] 제출(읍·면·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)